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 장

제 628호
2008년 3월 19일 수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7호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8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9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 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0호 인천광역시서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1호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2호 인천광역시서구평생교육조례 ····· 10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 장

제 628호

2008년 3월 19일 수요일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3호 인천광역시서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4호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5호 인천광역시서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관한 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6호 인천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7호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원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10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 고시 ··· 3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3호선)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219호 신조공인공고 ····· 44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4조"를 "제62조"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중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7조의"를 "제42조의"로 한다.

제2조 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7호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의"를 "제90조 및 제91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하고, "제15조의3의"를 "제35조의"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중 "영 제15조의"를 "영 제33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8조 내지 제41조"를 "제44조 내지 제47조"로 하고, "제19조의4의"를 "제54조의"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법 제38조의"를 "법 제44조의"로 한다.

제3조중 "영 제19조의4의"를 "영 제54조의"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36조제1항의"를 "법 제41조제1항의"로 하고, "법 제125조의"를 "법 제134조의"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제118조의"를 "법 제127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하고,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제82조 및 제84조의"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제56조의"를 "제64조의"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기업법 제35조의"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로 하고, "같음한다." 다음에 "다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장과 협의하여 결산검사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9조중 "제47조제3항의"를 "제84조제3항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기능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위원 본인 의사에 의해 사직한 경우

제5조(위원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외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평생학습관 설치)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 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8조(학습관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학습관 운영 등) ① 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 위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문화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위탁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학습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요원)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인 이내의 평생 교육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및「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5억원"를 "10억원"으로 한다.

제14조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9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원
2.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증명	1통	4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 일반발급(흑백도면)의 경우	1필지	1,000원
(나) 칼라발급 또는 별도도면 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건	8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3) 징수유예증명	1통	3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1)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	300원
(2) 선급금정산확인원	1통	300원
(3)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300원
5. 기타제증명등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4)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	600원
(3)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3)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20,000원
(4)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칭,구조,이전)	1건	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2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7) 치과기공소 인정, 이전신청 및 양수신고	1건	10,000원
(8)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90,000원
(9)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원
3. 문화공보관계		
(1) 유통관련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등록· 허가	1건	40,000원
(2) 유통관련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등록· 허가사 변경신고	1건	30,000원
(3) 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신고	1건	40,000원
(4) 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5) 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6)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30,000원
(7)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	1건	15,000원
(8)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원
(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10)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11) 공연장 변경등록	1건	20,000원
(12) 영화상영관 등록	1건	30,000원
(1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4. 부동산중개업관계		
(1) 법인인 중개업자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27,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6,000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5. 석유판매업관계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6. 수산업관계		
(1) 연안어업 허가	1건	8,000원
(2) 구획어업 허가	1건	10,000원
(3)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5,500원
(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5,000원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800원
(6)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2,200원
(7)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8) 내수면어업 면허	1건	20,000원
(9) 내수면어업 허가	1건	20,000원
(10)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1건	6,000원
(11) 어업권 분할인가	1건	6,000원
(12) 어업권 변경인가	1건	6,000원
(13)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1건	9,000원
(14)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0원
7. 교통행정관계		
(1)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5,0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1대	5,0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1대	5,000원
(4)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1대	5,000원
(5) 차고지설치확인서	1건	6,000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 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소규모급수시설 지정) ① 소규모급수시설은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신청은 협의회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4조(소규모급수시설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울타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수질검사) ① 구청장은「수도법」제55조,「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原水) 및 정수(淨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 ·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구청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지) ① 구청장은 수질오염,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관리비 징수) ① 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비(전기료, 기타 유지관리 필요비용 포함)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비는 최소경비로 산출하여야 하며 징수액 결정 및 지출방법 등은 관리비 운영 세부규정을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정한 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용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4조(협의회 설치) 사용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 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 대표자는 소규모급수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 선출 한다

② 대표자는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총무1인, 간사 1인, 시설관리위원 3인을 임명 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위원 중 시설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시설관리책임자는 대표자를 보좌하고 대표자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책임자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회사, 전문가포함)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와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규모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관련)

○ 규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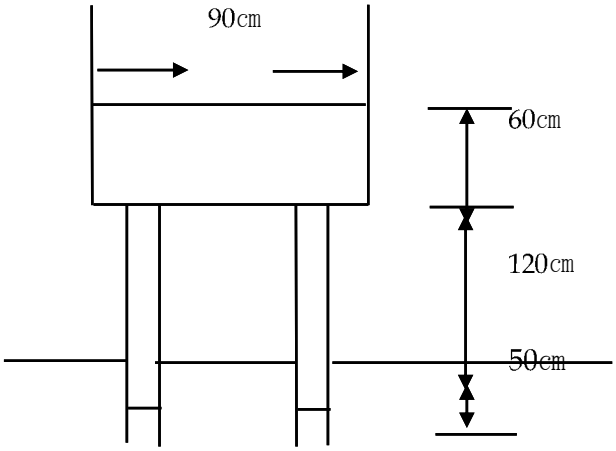

○ 재료 : 표지판 - 알루미늄(두께 3㎜), 기둥 - 스테인리스(직경 50㎜)

○ 색채 : 바탕(흰색), 글씨(청색)

○ 내용문안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발견 시 연락처
서구청 위생과 (TEL : 560-4381~8)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급수시설 지정 신청서(제3조제2항관련)

구 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마을									
	관리자	성 명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준공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시설 현황	수원 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시설 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 타( )									
	취수 시설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집 수 정 1				심도 : m				
			집 수 정 2				심도 : m				
			양수모터 1				마력				
			양수모터 2				마력				
	정수 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 전 지 ③여 과 지 ④배 수 지 ⑤기 타( )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 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종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	m		㎜	m			
		소 계		㎜	m		㎜	m			
		소 계		㎜	m		㎜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한 급수	1차 :	2차 :		3차 :		계 : 일간				
개량 내역	계량 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 (제4조제2항관련)

관리번호	서구 제 호									
구 분	항 목	내 역								
일반현황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 마을								
	관 리 자	성 명				전화번호				
	준공연월일					최초사업자				
시설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집 수 정 ②양 수 모 터 ③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집 수 정1				심도 M			
			집 수 정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	m		㎜	m		
		소 계		㎜	m		㎜	m		
		소 계		㎜	m		㎜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 . . .	2차 : . . .		3차 : . . .					
수원상태	수질오염	수질검사상태			주변오염원 산재여부					
	출수상태									
특기사항	시설보수									
	수원이전									
	급수상태									

〔별지 3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관련)

관리번호	인천서구 제 호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한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표4의 제목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3조제1항관련)"를 "옥외광고업등록수수료(제33조제1관련)"로 한다.

별표5의 위반사항 란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기 준	과 태 료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가.30일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5만원
나.30일이상 90일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다.90일이상 180일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만원
라.180일이상 1년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0만원
마.1년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40만원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30조제1항 관련)

기 술 능 력	시 설 기 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 고 :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중 제2호(신설)

위 반 사 항	기 준	과 태 료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	15만원
나. 30일이상 90일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만원
라. 180일이상 1년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0만원
마. 1년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40만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모·부자복지법」 제1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하고,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세대구성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10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서부여성회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축과(560-4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년 3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명칭】 서부여성회관 건립공사
3. 사업의 규모 : A = 4,2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8. 3월 ~ 2010. 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 사유지 편입조서 총괄

(단위: ㎡, 필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1	서구 석남동	322-2	전	12	12	
2	서구 석남동	322-57	전	3	3	재정경제부
3	서구 석남동	325	전	1,336	1,336	
4	서구 석남동	326	전	467	467	
5	서구 석남동	327-10	전	32	32	
6	서구 석남동	329-10	전	1,465	1,465	
7	서구 석남동	329-11	전	445	445	
8	서구 석남동	329-14	임야	318	318	
합 계				4,078	4,078	

◎ 무상귀속 편입조서 총괄

(단위: ㎡, 필지)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고
1	서구 석남동	417-8	도	162	162	건설교통부
합계				162	162	

편입토지조서

일련번호	편입토지현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관계	주소	종류	
1	인천 광역시 서구 석남동	322 -2	전	12	12	박인자	인천 서구 가좌동 108-1				
						김홍철	인천 서구 가좌동 108-1				
						정지한	인천 서구 심곡동 302 한국아파트 202-1414	이 진갑		근저당권 설정	
2	인천 광역시 서구 석남동	322 -57	전	3	3	재정 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3	인천 광역시 서구 석남동	325	전	1,336	1,336	윤동일	인천 중구 인현동 1				
4	인천 광역시 서구 석남동	326	전	467	467	윤동일	인천 중구 인현동 1				
5	인천광 역시 서구 석남동	327 -10	전	32	32	윤동일	인천 중구 인현동 1				
6	인천 광역시 서구 석남동	329 -10	전	1,4 65	1,46 5	윤동일	인천 중구 인현동 1				
7	인천 광역시 서구 석남동	329 -11	전	445	445	윤동일	인천 중구 인현동 1				

8	인천 광역시 서구 석남동	329 -14	임야	318	318	김현범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8-5				
						이기안	서울 관악구 봉천동 496-2				
						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653-378				
9	인천 광역시 서구 석남동	417 -8	도	162	162	황복묵	서울 구로구 고척동 43-44				
						건설 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지장물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건 물											
1	석남동	326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재	㎡	151.07	김용진	서구 석남동 329-1			
2		329 -14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재	㎡	1.11	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653-378			
■ 공 작 물											
1	석남동	322 -2	농기구		-	1식	김용진	서구 석남동 329-1			
2	석남동	325	포도나무 지주대		EA	171	윤동일	중구 인현동 1			
			포도나무 거치대		㎡	2,31.0					포도밭 면적
			과수원 휀스		㎡	113.50					h=1.5m
■ 임 목 종											
1	석남동	325	두릅나무	3년생	주	31	김용진	서구 석남동 329-1			
			매 실 나 무	6년생	주	144					
			포 도 나 무	7년생	주	118	윤동일	중구 인현동 1			
2	석남동	329 -10	배 나 무	7년생	주	35	윤동일	중구 인현동 1			
			포 도 나 무	7년생	주	41					
3	석남 동	329 -14	감 나 무	3년생	주	2	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653-378			
			밤 나 무	20년생	주	1					흉고 1.6m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3호선)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53호선, 사업명: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설과(560-45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지적 분할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36-3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1류53호선)
   【명칭】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525m, B = 2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8. 1월 ~ 2008.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과 같음
10.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당초	원창동	31-2	도	925.0	28.0	28.0		897.0	국	인천광역시				
1	변경	원창동							-						
1-1	당초	원창동							-						
1-1	변경	원창동	31-9	도	33.0	33.0	33.0		-	국	인천광역시				
2	당초	원창동	31-5	임	149.0	94.0	94.0		55.0	국	산림청				
2	변경	원창동							-						
2-1	당초	원창동							-						
2-1	변경	원창동	31-11	임	94.0	94.0	94.0		-	국	산림청				
2-2	당초	원창동							-						
2-2	변경	원창동	31-10	임	4.0	4.0	4.0		-	국	산림청				
3	당초	원창동	31-7	도	463.0	179.0	176.0	3.0	284.0	국	건설교통부				
3	변경	원창동							-						
3-1	당초	원창동							-						
3-1	변경	원창동	31-12	도	185.0	185.0	185.0		-	국	건설교통부				
4	당초	원창동	132-21	도	262.0	262.0	262.0		-	국	인천광역시				
4	변경	원창동	132-21	도	262.0	262.0	262.0		-	국	인천광역시				
5	당초	원창동	132-22	임	72.0	3.0		3.0	69.0	박희원	남구 학익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				
5	변경	원창동							-						
5-1	당초	원창동							-						
5-1	변경	원창동	132-36	임	5.0	5.0	5.0		-	박희원	남구 학익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				
6	당초	원창동	132-29	임	10.0	10.0	3.0	7.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6	변경	원창동	132-29	임	10.0	10.0	10.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7	당초	원창동	132-6	도	28.0	12.0	4.0	8.0	16.0	박희원	남구 학익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				
7	변경	원창동							-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7-1	당초	원창동							-						
7-1	변경	원창동	132-32	도	12.0	12.0	12.0		-	박확원	남구 학익동 645 선동아파트46동 905호				
8	당초	원창동	132-23	도	12.0	12.0	12.0		-	국	인천광역시				
8	변경	원창동	132-23	도	12.0	12.0	12.0		-	국	인천광역시				
9	당초	원창동	132-3	임	125.0	40.0	40.0		85.0	기전산업 주식회사	남동구 고잔동 726-7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남동공단지점)	근저당	
9	변경	원창동							-						
9-1	당초	원창동							-						
9-1	변경	원창동	132-31	임	37.0	37.0	37.0		-	기전산업 주식회사	남구 고잔동 726-7				
10	당초	원창동	205-1	도	945.0	239.0	228.0	11.0	706.0	국	건설교통부				
10	변경	원창동							-						
10-1	당초	원창동							-						
10-1	변경	원창동	205-3	도	242.0	242.0	242.0		-	국	건설교통부				
11	당초	원창동	129-12	전	52.0	45.0	8.0	37.0	7.0	정의태	서울 강서구 화곡동 391-57				
11	변경	원창동							-						
11-1	당초	원창동							-						
11-1	변경	원창동	129-18	전	43.0	43.0	43.0		-	정의태	서울 강서구 화곡동 391-57				
12	당초	원창동	129-11	도	337.0	47.0	19.0	28.0	29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12	변경	원창동							-						
12-1	당초	원창동							-						
12-1	변경	원창동	129-16	도	36.0	36.0	36.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12-2	당초	원창동							-						
12-2	변경	원창동	129-17	도	8.0	8.0	8.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13	당초	원창동	129	도	60.0	60.0	59.0	1.0	-	박지원	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 7동 206호				
13	변경	원창동	129	도	60.0	60.0	60.0		-	박지원	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 7동 206호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4	당초	원창동	129-6	전	117.0	60.0	5.0	55.0	57.0	박학원 외1인	남구 학익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				
14	변경	원창동							-						
14-1	당초	원창동							-						
14-1	변경	원창동	129-13	전	56.0	56.0	56.0		-	박학원 외1인	남구 학익동 645 신동아아파트46동 905호				
15	당초	원창동	132-1	대	491.0	68.0	10.0	58.0	423.0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5	변경	원창동							-						
15-1	당초	원창동							-						
15-1	변경	원창동	132-30	대	77.0	77.0	77.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6	당초	원창동	132-26	대	474.0	474.0	474.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6	변경	원창동	132-26	대	474.0	474.0	474.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7	당초	원창동	132-5	도	66.0	66.0	66.0		-	박지원	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7동 206호				
17	변경	원창동	132-5	도	66.0	66.0	66.0		-	박지원	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7동 206호				
18	당초	원창동	132-7	도	7.0	7.0	7.0		-	박지원	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7동 206호				
18	변경	원창동	132-7	도	7.0	7.0	7.0		-	박지원	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7동 206호				
19	당초	원창동	132-20	전	869.0	507.0	470.0	37.0	362.0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19	변경	원창동							-						
19-1	당초	원창동							-						
19-1	변경	원창동	132-35	전	511.0	511.0	511.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0	당초	원창동	129-7	대	714.0	25.0	12.0	13.0	689.0	박갑준	남동구 만수동 924-1				
20	변경	원창동							-						
20-1	당초	원창동							-						
20-1	변경	원창동	129-14	대	20.0	20.0	20.0		-	박갑준	남동구 만수동 924-1				
21	당초	원창동	129-3	도	22.0	22.0	22.0		-	박용섭 외1인	132-1	인천세무서		압류	
21	변경	원창동	129-3	도	22.0	22.0	22.0		-	박용섭 외1인	132-1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편입면적(M²)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권리내용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22	당초	원창동	129-9	도	4.0	4.0	4.0		-	박용섭 외1인	132-1				
22	변경	원창동	129-9	도	4.0	4.0	4.0		-	박용섭 외1인	132-1				
23	당초	원창동	160-1	도	2,552.0	4.0	4.0		2,548.0	국	인천광역시 서구				
23	변경	원창동	160-1	도	2,552.0	4.0	4.0		2,548.0	국	인천광역시 서구				
23-1	당초	원창동							-						
23-1	변경	원창동	129-15	장	1.0	1.0	1.0		-	에스케이 인천정유	129-8				
24	당초	원창동	132-17	전	512.0	6.0		6.0	506.0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4	변경	원창동							-						
24-1	당초	원창동							-						
24-1	변경	원창동	132-33	전	5.0	5.0	5.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5	당초	원창동	131-2	도	11.0	11.0	11.0		-	최용복	석남동 353-4				
25	변경	원창동	131-2	도	11.0	11.0	11.0		-	최용복	석남동 353-4				
26	당초	원창동	131-4	도	2.0	2.0	2.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26	변경	원창동	131-4	도	2.0	2.0	2.0		-	국	인천광역시 서구				
27	당초	원창동	132-18	전	827.0	253.0	193.0	60.0	574.0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7	변경	원창동							-						
27-1	당초	원창동							-						
27-1	변경	원창동	132-34	전	257.0	257.0	257.0		-	임순학	서울 은평구 신사동 28-7				
28	당초	원창동	132-24	전	223.0	35.0		35.0	188.0	이정용 외1인	인천 서구 신현동 200-6 원흥아파트1동708호				
28	변경	원창동							-						
28-1	당초	원창동							-						
28-1	변경	원창동	132-37	전	34.0	34.0	34.0		-	이정용 외1인	인천 서구 신현동 200-6 원흥아파트1동708호				
29	당초	원창동	131-1	대	648.0	634.0	548.0	86.0	14.0	최용복	석남동 353-4				
29	변경	원창동							-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9-1	당초	원창동							-						
29-1	변경	원창동	131-5	대	635.0	635.0	635.0		-	최용복	석남동 353-4				
30	당초	원창동	130-1	전	544.0	465.0	352.0	113.0	79.0	최용복	석남동 353-4				
30	변경	원창동							-						
30-1	당초	원창동							-						
30-1	변경	원창동	130-5	전	473.0	473.0	473.0		-	최용복	석남동 353-4				
31	당초	원창동	130-3	전	332.0	195.0	103.0	92.0	137.0	도선기	130-3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31	변경	원창동							-						
31-1	당초	원창동							-						
31-1	변경	원창동	130-7	전	191.0	191.0	191.0		-	도선기	130-3				
32	당초	원창동	154-4	대	388.0	234.0	135.0	99.0	154.0	김갑수	155				
32	변경	원창동	154-4	대	388.0	234.0	234.0		154.0	김갑수	155				
33	당초	원창동	154-1	전	220.0	104.0	8.0	96.0	116.0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지상권, 근저당	
33	변경	원창동	154-1	전	109.0	109.0	109.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4	지상권, 근저당	
34	당초	원창동	154-8	전	263.0	263.0	263.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5	지상권, 근저당	
34	변경	원창동	154-8	전	263.0	263.0	263.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5	지상권, 근저당	
35	당초	원창동	154-2	전	60.0	60.0	60.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6	지상권, 근저당	
35	변경	원창동	154-2	전	60.0	60.0	60.0		-	정덕영	가정동 569 한국아파트 301동 504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정동 482-6	지상권, 근저당	
36	당초	원창동	154-3	대	304.0	282.0	230.0	52.0	22.0	김명득	155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장도갑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05-4(구월동남지점) 인천시 남구 주안동 61-21	근저당, 지상권	
36	변경	원창동	154-3	대	304.0	282.0	282.0		22.0	김명득	155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장도갑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05-4(구월동남지점) 인천시 남구 주안동 61-21	근저당, 지상권	
37	당초	원창동	154-5	전	243.0	17.0		17.0	226.0	김천식	154				
37	변경	원창동							-						
37-1	당초	원창동							-						
37-1	변경	원창동	154-10	전	15.0	15.0	15.0		-	김천식	154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권리내용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38	당초	원창동	155-1	대	512.0	440.0	367.0	73.0	72.0	김명득	155	근해안강양수산업협동조합 정도강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05-4(구월동남지점) 인천시 남구 주안동 61-21	근저당, 지근저당	
38	변경	원창동							-						
38-1	당초	원창동							-						
38-1	변경	원창동	155-9	대	433.0	433.0	433.0		-	김명득	155				
39	당초	원창동	153-3	전	1,025.0	90.0	60.0	30.0	935.0	서정안	서울 강북 미아 1354 벽산라이브파크 아파트 108-1201				
39	변경	원창동	153-1	전	1,025.0	90.0	90.0		935.0	서정안	서울 강북 미아 1354 벽산라이브파크				
40	당초	원창동	산46-1	임	595.0	29.0	6.0	23.0	566.0	인희석 외 1인	동구 송림동 30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지분 제한	
40	변경	원창동							-						
40-1	당초	원창동							-						
40-1	변경	원창동	산46-4	임	13.0	13.0	13.0		-	인희석 외 1인	동구 송림동 30				
41	당초	원창동	152-14	전	1,217.0	600.0	452.0	148.0	617.0	최용복	152				
41	변경	원창동							-						
41-1	당초	원창동							-						
41-1	변경	원창동	152-25	전	601.0	601.0	601.0		-	최용복	152				
42	당초	원창동	152-11	전	3,494.0	669.0	470.0	199.0	2,825.0	김생근	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아파트 114-302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새마을금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 206	압류 근저당, 지	
42	변경	원창동							-						
42-1	당초	원창동							-						
42-1	변경	원창동	152-23	전	643.0	643.0	643.0		-	김생근	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아파트 114-302				
43	당초	원창동	산46-3	임	298.0	2.0		2.0	296.0	박석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1-3 우남빌라-106	환창농업협동조합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42-4	근저당	
43	변경	원창동	산46-3	임	298.0	2.0	2.0		296.0	박석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1-3 우남빌라-106	환창농업협동조합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42-4	근저당	
44	당초	원창동	산45	임	8,926.0	2,422.0	1,683.0	739.0	6,504.0	정영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2 트라움하우스 2-30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가압류	
44	변경	원창동							-						
44-1	당초	원창동							-						
44-1	변경	원창동	산45-1	임	2,610.0	2,610.0	2,610.0		-	정영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2 트라움하우스 2-302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5	당초	원창동	152-2	전	1,088.0	635.0	504.0	131.0	453.0	정길수	동구 송림동 58-48			
45	변경	원창동							-					
45-1	당초	원창동							-					
45-1	변경	원창동	152-19	전	630.0	630.0	630.0		-	정길수	동구 송림동 58-48			
46	당초	원창동	152-8	전	1,792.0	934.0	726.0	208.0	858.0	심경섭	백석동 6	서인천농업협동조합(검암지점)	인천시 서구 가정동 482-4	근저당, 지상권
46	변경	원창동							-					
46-1	당초	원창동							-					
46-1	변경	원창동	152-22	전	905.0	905.0	905.0		-	심경섭	백석동 6			
47	당초	원창동	산44	임	893.0	25.0		25.0	868.0	정길수	석남동 364			
47	변경	원창동							-					
47-1	당초	원창동							-					
47-1	변경	원창동	산44-1	임	76.0	76.0	76.0		-	정길수	석남동 364			
48	당초	원창동	152-7	전	3,501.0	809.0	717.0	92.0	2,692.0	정영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2 트라움하우스 2-30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가압류
48	변경	원창동							-					
48-1	당초	원창동							-					
48-1	변경	원창동	152-21	전	818.0	818.0	818.0		-	정영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2 트라움하우스 2-302			
49	당초	원창동	150-1	전	2,724.0	564.0	416.0	148.0	2,160.0	김점숙	석남동 353-4			
49	변경	원창동							-					
49-1	당초	원창동							-					
49-1	변경	원창동	150-3	전	547.0	547.0	547.0		-	김점숙	석남동353-4			
50	당초	원창동	144	전	2,073.0	40.0	29.0	11.0	2,033.0	최기환	신현동 278	서인천농업협동조합(율도지점)	인천시 서구 가정동 482-4	근저당
50	변경	원창동							-					
50-1	당초	원창동							-					
50-1	변경	원창동	144-1	전	28.0	28.0	28.0		-	최기환	신현동 278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분)

서구 원창동

번호	구분	리명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잔여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비고
						계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1	당초	원창동	143-2	전	820.0	557.0	433.0	124.0	263.0	김응운	152-18				
51	변경	원창동							-						
51-1	당초	원창동							-						
51-1	변경	원창동	143-14	전	533.0	533.0	533.0		-	김응운	152-18				
52	당초	원창동	408	전	10,244.7	1,310.0	1,029.0	281.0	8,934.7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2	변경	원창동							-						
52-1	당초	원창동							-						
52-1	변경	원창동	408-3	전	1,342.0	1,342.0	1,342.0		-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합계	당초				52,535.7	13,955.0	10,804.0	3,151.0	38,580.7						
합계	변경					14,127.0	14,127.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19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인신조 사유
- 민원전용 자동인증기 구입·사용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08년 3월 24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공인명	규 격	인 영
1	검암경서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2	연희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3	가정1동장인/민원전용3	2.4㎝ X 2.4㎝	
4	가정2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5	가정3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6	신현원창동장인/민원전용3	2.4㎝ X 2.4㎝	
7	석남1동장인/민원전용3	2.4㎝ X 2.4㎝	
8	석남2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9	석남3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10	가좌1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11	가좌2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12	가좌3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13	가좌4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14	검단1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15	검단2동장인/민원전용2	2.4㎝ X 2.4㎝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공인명	규 격	인 영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암경서동민원전용2	2.4㎝ X 2.4㎝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연희동민원전용2	2.4㎝ X 2.4㎝	
3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민원전용3	2.4㎝ X 2.4㎝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2동민원전용2	2.4㎝ X 2.4㎝	
5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3동민원전용2	2.4㎝ X 2.4㎝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신현원창동민원전용3	2.4㎝ X 2.4㎝	
7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1동민원전용3	2.4㎝ X 2.4㎝	
8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2동민원전용2	2.4㎝ X 2.4㎝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3동민원전용2	2.4㎝ X 2.4㎝	
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1동민원전용2	2.4㎝ X 2.4㎝	

1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2동민원전용2	2.4㎝ X 2.4㎝	
12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3동민원전용2	2.4㎝ X 2.4㎝	
13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4동민원전용2	2.4㎝ X 2.4㎝	
14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검단1동민원용2	2.4㎝ X 2.4㎝	
15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검단2 동민원용2	2.4㎝ X 2.4㎝	